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, 거주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공공건설 임대주택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임대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다양한 업역의 종사자들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,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해당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”을 “통합공공임대주택, 장기전세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”으로, “제외한다” 및 제18조”를 “제외한다”, 제18조 및 제20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7조의2제1항·제2항 또는 제18조”를 “제17조의2제1항·제2항, 제18조 또는 제20조”로 한다.

제31조 전단 중 “단서”를 “단서 또는 제23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 6의4 제3호가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공공주택사업자는 「소득세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이 없어도 해당 지역의 실정 또는 수요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.

별표 6의4 제3호나목1)라)(1) 중 “가목1), 2) 및 3)가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일한”을 “동일한”으로, “이상인”을 “이상이거나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동일 지역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영위한”으로 하고, 같은 목 3)나) 중 “제1호라목2)[청년의 경우에는 가목1)”을 “제1호라목2)[청년의 경

다.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제14조, 제15조, 제17조, 제17조의2제1항·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. ④ ~ ⑥ (생략) 제31조(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) 영 제44조제6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”이란 해당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주변 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(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퍼센트(제20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)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17조의2제1항·제2항, 제18조 또는 제20조-----. ④ ~ ⑥ (현행과 같음) 제31조(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단서 또는 제23조제2항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--	--